

악취방지법 및 악취관리제도



문 제 원
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

제1장. 머리말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환경오염 중 대기오염¹⁾ 및 수질오염²⁾과 악취는 우리의 일상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오염현상으로 크게는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와 같은 범지구적인 규모에서 런던 및 LA 스모그, 일본의 미나타마병, 이 타이이타이병과 같은 도시적·지역적 수준으로, 작게는 이웃과 이웃간 악취 발생, 음용수 오염과 같은 국지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체의 시설들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오염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해 오고 있

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수단 중 산업체의 오염물질 배출통제를 위한 법규사항으로는 국민이 감각기관인 후각을 통하여 느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지극히 낮은 농도에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시켜 대기질 전반에 걸쳐 환경정책의 불신을 초래하고 매우 다양한 원인물질들이 독립적, 부가적·상쇄적·상승적작용을 통하여 복합적으로 악취의 세기가 나타나고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등의 악취의 특성으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저감에 한계점이 도달함에 따라 도입한 악취방지법을 중심으로 악취관리 제도를 기술하고 향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 악취개요

악취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과 함께 독립된 환경오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

1)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2)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이 존재하여 오염물질의 양, 농도 및 지속시간이 어떤 지역의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지역에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상태(WHO)

3) 물의 자연정화 능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천연의 자연수역에 인위적으로 배출되어 물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된 상태

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 6법의 기본이 되는 공해대책기본법을 1967년 제정할 당시, 공해대책법에서 공해를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및 진동, 지반침하 및 악취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로 정의하여, 악취를 대기오염과 동등하면서도 구분된 독립적인 공해항목으로 정의하면서 대기오염의 경우 아황산가스 등 일반적인 대기질을 우선으로 다루는 반면, 악취는 감각공해로서 생활환경 및 민원과 직결되는 분야에 해당되어 분석에서부터 규제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악취방지법에서는 각종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원인물질을 실제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외의 자료를 참고하여 인체에 유해(알데하이드류, 탄화수소류)하거나 민원의 요인이 되는 14종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지정악취물질⁵⁾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악취물질의 선정배경에는 수만 여종의 악취원인물질을 물질별로 관리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에서는 2001년도에 실시한 시화반월지역 대기 중의 악취원인물질 정밀조사와 각종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실제 조사한 것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물질 가운데 악취예상농도⁶⁾가 20배 이상인 물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자국에서 문제가 되는 물질 가운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22가지 물질에 대하여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악취의 주요특성

악취는 사람이 후각을 통하여 느끼는 대표적 감각공해로서 지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시

켜 대기질 전체에 불신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과 지역특성, 생활수준 등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동일한 냄새를 악취 또는 좋은 냄새로 인식하기도 한다.

또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매우 다양하고 악취의 세기는 독립적, 부가적·상승적·상쇄적작용 등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른 물질의 영향으로 소멸되거나 커지기도 한다.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의 배출농도와 악취의 세기는 대수관계로 비례하여 악취세기 1단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냄새물질 배출농도를 1/10 로 낮추어야 하고 일정한 배출구보다 취급과정 및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어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고 기온역전층이 낮고, 바람이 약할 때 악취의 세기가 증가하기도 하여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대기오염과 악취오염의 특성 비교〉

구분	대기오염	악취오염
오염물질의 발생	- 지속적·연속적 - 주로 배출구를 통해 배출	- 순간적 - 보관 등 주로 물질의 취급과정에서 배출
영향지역의 범위	- 광역적 ※ 발생원에서 수백km까지 영향	- 국지적 ※ 발생원에서 수km까지만 영향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급성·만성적 건강피해 ※ 호흡기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들의 사망률·입원을 증가	- 감각공해(불쾌감, 혐오감) ※ 일부 민감한 사람은 구토 증세
규제대상 오염물질	- 환경기준 항목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중심으로 규제	- 주된 악취물질(8종)과 함께 특정한 물질 이 아닌 복합악취(악취물질)도 규제
규제대상 시설	- 일정배출구를 가진 배출시설 ※ 전국 어느 곳이든 위치에 관계없이 규제대상	- 배출구를 가진 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분뇨·하수처리장, 농수산물시장 등도 대상 ※ 일정거리(수k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규제 불필요
기타	- 기체상 물질에 국한	- 기체상물질, 폐기물 등에 확대 적용 등

4)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제1호

5)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제2호 지정악취물질이라 함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악취예상농도라 함은 실측농도를 최소감지농도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2장. 규제의 대상과 변천

1. 규제대상 물질

가. 복합악취

복합악취⁷⁾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사업장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는 것도 한다.

〈지정악취물질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8종)	악취방지법(22종)	
	물질명	적용시기
1. 암모니아	1. 암모니아	2005년2월
2. 메틸머캅탄	2. 메틸머캅탄	10일부터 시행,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3. 황화수소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티르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13. 톨루엔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스뷰티르케톤	2010년1월 1일부터
	17. 뷰티르아세테이트	
	18. 프로피온산	
	19. n-뷰티르산	
	20. 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티르알코올	

나. 지정악취물질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여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2종의 물질을 정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2. 규제대상 시설과 사업장

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악취규제의 대상

2005년2월9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악취규제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생활악취시설, 노천소각을 금지하는 악취발생물질로 구분하였으며, 2005년2월10일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더 이상 악취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가죽제품 제조시설, 조각시설, 도장·건조시설, 석유정제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2) 생활악취시설 :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세탁시설, 자동차 수리업 등 대기배출시설 이외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9)

3) 노천소각을 금지하는 악취발생물질 :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나. 악취방지법에서의 악취규제의 대상

악취방지법 제정(법률 제7170호, 2004.2.9공포, 2005.2.10시행)으로 악취관리지역안과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구분하여 규제하고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7)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의 비교 1

악취방지법의 주요내용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폭 확대('99.10~' 05.2)

4) 악취방지법 제정(2004.2.9공포, 2005.2.10 시행)

3. 악취규제의 변천과 문제점

가. 악취규제의 변천

공해방지법 제정('63.11.5) 당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의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공해방지법 전문을 개정(1971.1.22)하면서 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설정되어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공해방지법이 폐지(1977.12.31)되면서 총 11장으로 구분된 환경보전법에서 오염매체별 관리개념이 도입되었고 악취는 제4장 대기보전에서 다루어졌다.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전문화 및 복잡화된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0년8월1일 환경보전법을 폐기하고 각 오염매체별로 대응하기 위한 분법화가 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1990.8) 생활악취시설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등 악취규제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왔다.

1) 공해방지법(1963.11.5제정, 1977.12.31폐지)

1971.1.22 공해방지법 전문개정, 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배출허용기준(피해지점의 허용농도가 관능법 2도, 식염수법 30이하)을 설정하여 규제

2) 환경보전법(1977.12.31제정, 1990.8.1폐지)

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배출허용기준(피해지점의 허용농도가 관능법 2도, 식염수법 30이하)을 설정하여 규제

3) 대기환경보전법(1990.8.1제정~현재)

- 농수산물도매시장 · 공판장, 도축장 등 5개 시설 ('90.8, 생활악취규제 신설)
- 공중변소 · 분뇨처리시설, 세탁업 등 6개 시설 추가 및 부지경계선, 배출구에서의 악취배출허용기준 도입('92.8)
- 방직 · 직조 및 섬유가공업, 부산물비료제조업 등 추가 확대('96.9, 확대)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등 추가 확대('98.2, 확대)
- 대부분의 제조업, 하 · 폐수종말처리시설 포함 등 대

나. 악취관리의 문제점

악취는 국민이 직접 후각으로 느끼는 환경오염의 지표로서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피해를 유발하여 대기질 전반에 대한 불신 초래하여 왔으며, 수도권 일대 부적격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조성된 시화('86), 반월('77)국가산업단지 등 기타 공업지역 인근에 1980년대 말부터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등 환경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무분별한 난개발정책으로 공업지역과 주거지가 근접 또는 혼재하여서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악취오염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의 도시를 형성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악취는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물질이며, 기상에 따라 국지적 · 순간적으로 발생 ·

소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광역적 · 지속적인)하며,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구 이외의 공정에서도 다양하게 발생(야적 · 보관 등)하는 등 악취의 특성상 대기오염원 관리방식으로는 해결이 곤란하였다.

또한 후각으로 감지되는 냄새의 특성과 정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미량 악취물질의 분석기술 · 장비의 국내 보급이 미흡한 점 등 관련 연구기반도 취약하며, 대기배출시설 위주의 관리를 통한 악취 민원 발생을 저감시키는 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제3장. 악취방지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1. 제정의 필요성

가. 민원 해소 등의 관리목적에 부합되는 악취관리 제도 구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악취를 제외한 대기오염물질의

경우는 환경·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성분의 배출을 규제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시적이면서 경미한 감각적 피해를 일으키는 다양한 발생원을 가지고 있는 악취를 규제대상시설에 제약을 받지 않고 문제시설의 범위나 지역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악취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당위성이 요구되었다.

즉, 악취는 국민이 감각기관인 후각을 통하여 느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서 지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시켜 대기질 전반에 걸쳐 환경정책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택지 및 공장용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근접 또는 혼재하여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악취에 취약한 주거지의 형성과 악취의 특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위주의 관리로 악취로 인한 민원을 저감하는데 한계에 도달하였다.

<연도별 악취발생 민원 현황>

구분	총괄		규제대상				비규제대상		원인 불명	
			배출시설		생활악취시설					
	민원 접수 건수	피민원 업소수	민원 접수 건수	피민원 업소수	민원 접수 건수	피민원 업소수	민원 접수 건수	피민원 업소수	민원 접수 건수	
연도	'04	3,910	1,639	1,411	672	423	413	502	453	1,490
	'03	2,381	1,316	681	422	387	396	466	454	848
	'02	2,878	2,265	698	538	541	517	1,326	1,210	313
	'01	2,760	1,626	573	613	487	383	658	630	1,042

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악취의 규제목적은 규제기준 달성보다 민원·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발생원 중심의 국지적인 관리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기대는 악취물질의 존재여부가 아니라 불쾌감의 느낌에 대한 가부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그 냄새가 신경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악취로 인한 환경문제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

였으며 공장 및 축산시설과 하수관거, 하천, 폐기물야적 등 불특정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와 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악취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 객관적 악취측정기법 개발과 측정결과의 신뢰제고

악취를 유발하는 다양한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분석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취는 대부분 여러 가지 가스상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취기를 상승시키고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공해이므로 사람의 후각을 이용한 측정방법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직접관능법이 갖고 있는 객관성의 결여와 계량화 비용이성으로 측정결과에 대하여 산업계와 시민 등 모두로부터 불신을 초래하였다.

<악취방지법 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관리체계 변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 대기오염배출시설	○ 생활악취시설	○ 악취관리지역내	○ 악취관리지역 밖
전국	전국	악취관리지역 내 (시·도지사 지정)	악취관리지역 밖 (시장·군수 관리)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방지사설 포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악취방지계획 포함)	
↓		↓	
방지사설 설치		방지계획 이행	
↓		↓	
가동개시 신고	생활악취시설 운영	가동개시 신고 의무 없음	사업장 운영
↓	↓	↓	↓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운영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운영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음
↓	↓	↓	↓
배출허용기준 준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엄격한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준수
↓	↓	↓	↓
기준 초과	기준 초과	기준 초과	기준 초과
↓	↓	↓	↓
개선명령	조치·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신고
⇒ 시설에 대하여만 규제		⇒ 지역관리 위주의 규제	

악취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적인 악취측정기관의 도입, 기기분석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악취물질의 확대(기존8종 → 장래 22종)와 측정기법의 개발, 복합악취에 대하여는 관능적 시험이 우선적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직접관능법이 갖고 있는 객관성의 결여와 계량화 비용이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관능법(공기회석)이 도입과 관능법(공기회석)의 제한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기분석법의 병행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지금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관리차원에서 관리한 악취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및 배출시설의 설치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계획 수립과 이행 등의 악취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악취관리 제도를 정립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악취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60년대부터 악취를 전형적인 7대 공해의 하나로 규정하여 관리해 왔으며, '71년에는 악취방지법을 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2. 악취방지법 주요내용

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제2장. 규제의 대상과 변천 1. 규제대상 물질 가. 복합악취 나. 지정악취물질 참조

나.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⁸⁾이라 함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기계·기구·기타 물체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과 생활악취시설이 규제대상이나 실제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부분은 최종 배출구가 아닌 공정의 일부 또는 전체, 시설물 등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악취발생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악취를 배출하는 부분을 규제대상으로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부령에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 국민의 책무⁹⁾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이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이는 악취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악취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발생하는 악취도 규제할 필요성은 있으나, 위와 같은 비고정·비연속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가 국민생활에 끼치는 편익과 영향을 고려할 때 당장은 어려우므로 선언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라. 악취실태조사¹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안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와 아울러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조치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악취 민원 다발지역 등에 대한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 중 악취원인물질의 조사와 함께 악취원인물질 배출원에 대한 시설개선이 추진되어야 하고, 주기적인 대기 중의 악취물질의 농도와 민원발생건수 조사는 악취저감대책의 정상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제공하므로 악취실태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8)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9) 악취방지법 제3조 제3항

10) 악취방지법 제4조 제1항, 제2항

마. 악취오염공정시험방법¹¹⁾

환경부장관은 악취의 측정을 정확하고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악취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에에 따라 악취의 정도와 농도에 대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정과 더불어 별도의 악취오염공정시험방법을 마련하였다.

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¹²⁾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화 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악취관리지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대상,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악취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므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악취를 유발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악취피해지역 또는 건물의 인구, 피해정도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정한 후 악취방지계획의 수립·이행, 배출허용기준 준수, 필요시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보다 규제의 합리성이 제고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 일본의 경우 지자체장(도지사 또는 광역시장)은 악취규제가 필요한 전체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악취방지법으로 정한 악취규제 농도범위 중에서 자연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후 각 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역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는 규제기준 마련, 지자체는 악취의 피해 정도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및 기준 설정 등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이원화된 악취관리를 실시 중임. 실례로 쿠사츠시는 조례로 특정 공장 등을 정하여 그 설치에 대하여는 사전에 방 차원에서 인·허가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사. 배출허용기준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¹³⁾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도지사는 이러한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¹⁴⁾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조례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악취관리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지정한 악취관리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면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규제도 악취관리지역안과 바깥을 달리하여 악취관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지역별로 규제강도를 차별화하여 합리적인 차등 규제 실시함으로써 기업활동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즉,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관리지역에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적용하나 기준을 초과할 때 개선명령이 아닌 개선권고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아.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

11) 악취방지법 제5조, 국립환경연구원 고시 제 2005-4호(2005.2)

12)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

13) 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

14) 악취방지법 제7조 제2항

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당해 사업장의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첨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변경포함)¹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출시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당해 악취배출시설의 가동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¹⁶⁾를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시·도지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당해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고,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장소에 당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악취배출시설의 폐쇄¹⁷⁾를 명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획일적인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사업주 스스로 악취배출시설에 적합한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토록 함으로써 사전에 지역 및 공장부지 여건을 고려한 방지시설 설치와 공정개선 등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절감하면서 적정 악취저감방안이 수립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악취저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시화·반월지역의 사례〉 수도권 악취민원 다발지역인 시화·반월지역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98년부터 '01년까지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의 주요 악취배출 112개소에 대하여 악취발생 공정별 문제점을 파악한 후 업체 스스로 시설개선을 추진토록 유도한 결과 총 300억 원의 시설개선비용이 소요되었고, 시설개선은 지역의 악취저감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¹⁸⁾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자중 신고를 한 자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악취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중지¹⁹⁾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중지명령은 행정기관에서 개선할 수 기간을 부여 하였음에도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행은 하였으나 계속하여 기준을 초과 등 악취개선에 미온적이거나 의지가 부족한 사업자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벌칙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기준초과 누적(3~4회)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과 유사하다.

차. 과징금 처분

시·도지사가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처분에 대신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²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징금 부과대상을 악취방지법 제12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중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징금 처분은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도한 공익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15) 악취방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6) 악취방지법 제8조 제3항
 17) 악취방지법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18) 악취방지법 제10조(개선명령)
 19) 악취방지법 제11조(사용중지명령)
 20) 악취방지법 제12조(과징금 처분)

가. 악취발생물질 부정적 소각금지

고무·피혁·합성수지류·폐유류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그밖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²¹⁾하여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으로 인하여 다수의 타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타. 악취검사기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행하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대상으로는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화학분야의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악취의 측정**은 G.C 등 첨단 분석장비 및 인력이 갖추어져야 악취전반에 대한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능력을 갖춘 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

☞ **<일본의 사례>**일본의 경우 (사)취기대책연구협회가

환경성의 업무를 위탁받아 악취측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하여 “악취측정인정사업소”를 등록 해주고 있고, 등록은 취기대책연구협회 내에 심사위원회를 갖추어 등록을 희망하는 측정사업소로부터 신청서에 따라 기술수준, 설비기준의 심사 및 후각측정법의 기술수준에 관한 크로스 체크를 하고 필요에 따라 현지 실사를 실시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

〈악취검사기관과 측정대행업〉

구 분	악취검사기관	측정대행업
근거법령	- 악취방지법 제18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정 및 등록 목적	- 시·도지사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의 악취검사(공익성)	-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측정을 대행(영리성)
기술인력	- 대기환경기사 1인, 악취분석요원 1인, 악취판정요원 5인	- 대기환경기사 1인, 악취분석요원 1인
기타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 측정대행업 영업 불가	- 시·도에 등록

21) 악취방지법 제15조(악취발생물질의 부정적 소각금지)

「월간 ‘환경기술인」」 구독안내

- 구독방법 : 무통장 입금 기본(지로용지 납부 가능)
- 구독료 : 6만원(1년)
- 구입문의 : (02)852-2291(연합회 사무국)